

대 동 교 회 직 분 자 선 출 규 정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 : 12)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 동 교 회

대동교회 직분자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선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동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중직자인 장로, 장립집사, 권사의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 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다(위원은 4명으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당회원 중 당회 서기가 맡으며, 그 밖의 역할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교역자, 장립집사, 전문분야 종사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시무장로를 참관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한다.

제2장 공동의회

제3조 (소집 및 공고)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4조 (개회 성수)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회집된 당일 투표에 참가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5조 (선출규정의 게시)

위원회는 중직자 선출 선거 규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동의회 공고전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명부 = 선거인 명부)

- ① 선거를 위하여 사용할 공동의회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 명부 =회원명부)는 투표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

인)으로 하고, 회원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며, 동명이인이 있을 때는 이름 뒤에 알파벳을 부여하여 작성한다.

- ② 선거인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교역자실에서 교구별 가나다 순으로 작성한다.

제7조 (회원명부 열람)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공동의회 개최 2주 전부터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정 신청)

- ①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자)

- ①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 ② 선거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로 확정한다.

제10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①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라도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계속하여 예배에 불참한 교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 ②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헌법적 규칙 제3조 2항)

제11조 (피선거권자의 정원)

공동의회에서 선출할 중직자의 정원은 교회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피선거권자의 자격)

① 장로로 피선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장립집사와 협동장로(협동장로는 3년 이상 출석)로서
2. 디모데전서 3:1-7절에 해당하는 자
3. 헌금생활 [십일조, 목적헌금(선교, 절기 등)]에 충성한 자
4. 주일 예배 및 공적 집회에 참여하여 충성한 자

② (장립)집사로 피선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만35세 이상 남자
(1989년 1월 1일 ~ 1954년 12월 31일 생)
2. 본 교회 서리집사로 5년 이상 시무한 남자 서리집사와 협동장립집사
(본 교회 2년 이상 출석)
3. 디모데전서 3:8-10절에 해당하는 자
4. 헌금생활 [십일조, 목적헌금 등]에 충성한 자
5. 주일 예배 및 공적 집회에 참여하여 충성한 자

③ 권사로 피선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만45세이상 여자
(1979년 1월 1일 ~ 1954년 12월 31일 생)
2. 본 교회 서리집사로 5년 이상 시무한 여자 서리집사와 협동권사(본 교회 2년 이상 출석)
3. 디모데전서 3:11절에 해당하는 자
4. 헌금생활 [십일조, 목적헌금 등]에 충성한 자
5. 주일 예배 및 공적 집회에 참여하여 충성한 자

제4장 선거방법과 절차

제13조 (선거방법)

① 장로, 장립집사 및 권사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 득표한 자로 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2. 장립집사, 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 득표한 자로 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3.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2/3 이상 동표를 득표한 피선거권자가

정원 수를 초과 할 경우 당회의 결의(장로는 노회 허락)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후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직자(장로, 장립집사, 권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자는 임직지원서(서식 #1), 자가신양평가서(서식 #2)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한다
3. 지원자가 선출할 종직자의 정원보다 1차 선거에서는 2배수 미달 시에 당회의 심의로 정원의 2배수까지 선정한다. 단 2차 선거, 3차 선거 시에는 직전 회차 선거의 득표순에 따라 잔여 정원의 1.5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당회의 후보자 심의 및 선정

1.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지원자를 당회에 추천한다
2. 당회는 지원한 후보를 상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3. 지원한 후보자 중 적격여부는 결격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당회원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는 금한다
4. 합당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에서 제외한다
5. 당회는 정원의 배수(1차 선거 2배수)와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에 대해 후보자로 선정한다(1차 선거 한정)
6. 지원자가 선출할 종직자 정원의 2배수보다 미달 시에는 당회의 심의로 정원의 2배수까지 선정한다. 단 2차 선거, 3차 선거 시에는 직전 회차 선거의 득표순에 따라 잔여 정원의 1.5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단 2024년의 장로 1차 선거 후보는 현 장립집사 전원으로 한다).
7. 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1차 선거 한정)

제14조 (선거절차)

①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회 결의(노회 승인)로 직분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방법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 중직자 선출 규정 게시 → 중직자 선거 광고 → 후보자 지원(2주 前) → 후보자에 대한 심의 선정 및 후보자 광고(1주 前) → 선거 관련 광고 → 1차 투표와 개표(피택 공고) → 피택자 정원 부족시/ 2차 투표와 개표(피택 공고) → 피택자 정원 부족시/ 3차 투표와 개표 → 최종 피택 공고(교회 홈페이지)

- ② 상기 절차는 당회의 결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후보자 공고

제15조 (후보자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투표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투표일 1주일 전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2. 해당 후보자 게시내용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누구든지 수정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6조 (투표방법)

- ① 중직자 선거를 위한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제1차 투표 : 제15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후보자 가운데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한다
 2. 제2차 투표 : 제1차 투표에서 피택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되 제1차 투표에서 정원 미달 수의 1.5배수를 득표순(동점자는 연령순)으로 공천한다. 단, 공천 마지막 순위에 동점 득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공천한다(소수점 이하 절상한다)
 3. 제3차 투표 : 제2차 투표에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3차 투표를 실시하되 제2차 투표에서 정원 미달 수의 1.5배수를 득표순(동점자는 연령순)으로 공천한다. 단, 공천 마지막 순위에 동점 득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공천한다(소수점 이하 절상한다)
- ② 교구별 선거인명부에서 본인을 확인 서명하고 투표용지(OMR 카드)를 수령후 지정된 투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 ③ 직분자 선출은 1차(후보자 지원 및 당회 추천으로 후보 선정), 2차 선

거, 3차 선거 시에는 직전 회차 선거의 득표순에 따라 잔여 정원의 1.5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투표한다.

제17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는 장로, 장립집사, 권사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기계식(OMR카드) 용지를 사용한다.
- ② 투표용지는 제1차, 제2차, 제3차 투표 때 사용할 투표용지를 각각 구분한다.

제18조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

- ① 투표용지의 형식과 종류,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제작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 작성 시 피선거권 대상자(후보자) 중 동명이인에 대한 처리는 공동의회 회원명부 작성 제 6조 제①항에 따른다.

제19조 (회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 ①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회원명부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 ② 회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원이 회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제20조 (투표의 제한)

- ① 회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② 회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1조 (기표방법)

- ① 투표용지 해당란에 표기된 ○에 → ●로 표기한다(●표가 아닌 다른 표시나 이름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②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에서 선거권자가 직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찬성하는 자 란에 ●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정원 범위 이상 수를 ●표기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③ 신체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그 가

족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표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또는 대필 기표를 절대 할 수 없다.
- ⑤ 투표용지의 오염 또는 기재 중 오류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제22조 (투표의 비밀보장)

-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회원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3조 (공동의회 질서유지)

당회는 투·개표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

- ①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 ②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지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③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5조 (개표관리)

- ①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수거하여 개표한다.
- ② 개표 작업은 전자개표기(기계식)로 하며, 그 방법은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준비한다. 단 인식이 불가할 경우 수작업으로 한다.
- ③ 후보자별 득표순에 따라 명부를 작성한다.
- ④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 및 당회원 입회하에 하되, 작업량에 따라 일부 인원을 총당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관리 기록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회에 이관하고, 당회는 이를 수합 다음 직분자 선출

을 위한 공동의회까지 일정 장소에 보관한다.

제27조 (피택 확정과 선거결과 공포)

- ① 피택 확정은 유효투표수의 2/3(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이상을 득표한 자로 하고, 득표순으로 정리한다. 득표순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 입교일 순으로 한다.
- ② 유효투표수의 2/3 이상 동표를 득표한 피선거권자가 정원 수를 초과할 경우 당회의 결의(장로는 노회 허락)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피택자가 최종 확정되면 공동의회 의장은 후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포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장로의 임직)

장로로 피선된 후 당회의 지도 아래 임직자 교육을 받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 결의로 임직한다.

제29조 (장립집사, 권사의 임직)

장립집사, 권사로 피선 된 후 당회의 지도 아래 임직자 교육을 받고 시취, 임직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 결의로 임직한다.

제30조 (교회의 화평과 연합)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하여 성결과 질서를 손상 시키고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 경력,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위임 사항)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임 직 지 원 서

☐ 희망 직분: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직 분		현재사역	
경 력 (교회 내 사역)	- - - - -		
각종 훈련 및 교육 내역 (교회 내)	- - - - -		

위와 같이 임직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4월 일

위 지원자 (인)

- ※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장로지원자는 장립집사, 협동장로에 한합니다.

[서식 # 3]

중직자 선출 후보자 명부

구분	장 로	장립 집사	권 사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